



##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 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분

-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분
  - 보통 3개월간 유효하지만 특례로서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작성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작성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 시점에 상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유효로 간주하는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시의 상황과 입국 시의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커지므로 상기의 취급 이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신청 내용에서 변경이 없고 2022년 7월 31일 이후 당청이 지정하는 날까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①이미 교부받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및 ②받아들이는 기관 등이 작성한 이유서를 제출하면 신속하게 새로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중인 분
  - 현재 신청 중인 안건에 대하여 활동 시작 시기를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

## 2. 재류에 관한 각종 신청 중에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분

재입국 허가(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를 포함.)로 출국 중인 분이 출국 전에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또는 영주 허가 신청을 해둔 경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입국하지 못할 때는 **일본에 있는 친족 또는 받아들이는 기관의 직원 등이 당해 신청 허가에 관련된 재류 카드를 대리 수령하는 것을 인정하고, 출국 중인 분이 재입국 허가로 상륙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 3. 재입국 허가로 출국 중에 재류기한이 경과된 분 등

- ①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이 아닌 분(‘영주자’ 등)
  - 체재 중인 곳의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 ※ ‘영주자’인 분에 대해 자세하게는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 ‘영주자(고시 외)’ 및 ‘특정활동(고시 외)’인 분에 대해 자세하게는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②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교부 대상인 분(유학생, 기능실습생,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 일본에 중장기 재류자(유학생, 기능실습생 등)로 재류하던 분이 재입국 허가로 출국 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한 채 재류기한이 경과된 경우 등으로 다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및 받아들이는 기관이 작성한 이유서만으로** 심사합니다. ※자세하게는 [여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③ ‘고도전문직 2호’로 재류하고 계신 분
  - ②에 따라 ‘고도전문직 1호’로서 종전의 활동에 따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십시오.(‘고도전문직 1호’의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받지만, 입국 시에 일본의 공항에서 ‘고도전문직 2호’로 새로 입국하기 위한 수속이 가능합니다.)